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12 April 2016

Transfer Pricing Newsletter

KPMG Tax – Global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ada: Country-by-country reporting, transfer pricing proposals in 2016 federal budget](#)

캐나다 재무부는 2016년 국가재정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에는 정부 정책 등의 변동사항으로 인한 정부의 지출 비용 효과가 포함되며 금년도 예산안에는 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프로젝트의 권고 사항인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한 대응, 유권해석의 자동 교환,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작성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최종 모회사가 캐나다에 소재하거나 캐나다 소재 자회사 중 그룹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98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며 캐나다 과세당국(이하, "CRA")에 차기 사업연도 말 까지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과세당국 간 국가별 보고서의 교환은 2018년 6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관련 개정세법 초안은 5월 중에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 지침(Transfer Pricing Guidance)

동 예산안은 OECD 이전가격 지침서 상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CRA의 독립기업 원칙에 대한 현행 해석 및 적용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만 하기 두 개 규정에 대해서는 동 예산안 상 명확히 논의되지 않아 현재 도입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BEPS Action 9에 근거한 위험 및 자본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
- BEPS Action 10에 근거한 저부가가치 그룹내부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방법에 대한 기준

[Back to top](#)

IRS Practice Unit Examines Three Requirements to Apply Section 482

4월 6일 미국 과세당국(이하, "IRS")은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Practice Unit)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지침서는 납세자의 이전가격 정책 또는 특정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담당 조사관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훈련의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동 지침서는 482 규정은 IRS로 하여금 특정 특수관계거래에 있어 해당 납세자의 공헌한 정도에 부합하는 수익을 측정 및 배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세원 잠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는 482 규정이 적용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입니다.

- 두 개 이상의 법인 또는 거래 및 사업의 당사자가 존재하여야 함;
- 거래 당사자인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통된 직·간접적 지분 관계 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존재 하여야 함;
- 특정 소득배분이 세원잠식에 대한 방지 또는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IRS의

판단이 있어야 함.

[Back to to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시행규칙의 확정과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의 공표](#)

2016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당초 시행규칙(안)대로 공표하였으며, 동 시행규칙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주요 사항

시행령 21조의 2	시행규칙 제 6조의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합계액이 500억 원을 초과할 것(제1항 제1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을 산정시 재화거래 및 용역거래 뿐만 아니라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됨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상 포함되어야 할 정보(제2항)	국조법 별지서식 제8호의 2서식에 통합기업 보고서와 개별기업 보고서의 작성 양식이 포함됨
특수관계인의 정의 (제2항 제2호)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복수의 납세의무자 존재시 대표 제출 가능(제3항)	고시 항목 해당자 대표 제출 가능(고시 참조)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I. 통합기업 보고서의 작성 대상 및 제출방법

구분	내용
작성 대상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 회사
복수 납세자 존재시 대표 제출자	고시 항목 해당자 대표 제출 가능

II. 여러 사업군이 있는 경우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방법

구분	내용
가능 여부	사업군별 보고서 제출 가능
작성 대상	사업군 내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 회사
복수 납세자 존재시 대표 제출자	고시 항목 해당자 대표 제출 가능

III. 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구분	내용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의 예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국적기업은 자회사별 통합기업 보고서 제출 가능
작성 대상	해당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
복수 납세자 존재시 대표 제출자	고시 항목 해당자 대표 제출 가능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국조법 시행령 개정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1-1.pdf>

국조법 시행규칙 개정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1-2.pdf>

통합기업 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http://www.kr.kpmg.com/files/filedown.asp?fm=1-3.pdf>

[Back to top](#)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

